

[일련번호 : 9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전입신고 거주사실 사후확인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■■■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■■■동은 「주민등록법」 및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하면 전입신고를 접수한 전입지 동장은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력하여 관할 통장에게 송부하고 통장은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·서명(세대주(원)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의견란 작성)한 후 그 결과를 동장에게 알려야하며 통보받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■■■동은 감사대상 기간 동안 전입신고에 대하여 전입신고 사후 확인서를 최대 60일까지 지연하여 확인받았고, 세대주(원) 서명 또는 날인, 통장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전입신고 거주사실 사후확인 소홀 내역

구분	부적정 사례
2022년 ~ 2024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주여부 확인 체크했으나 세대주(원) 서명 누락(확인자 의견란 공란) - 통장 서명 누락 - 통장이 세대주(원) 및 통장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사례 - 확인자 의견란에 통장 이름만 적고 세대주(원) 서명 없이 제출하였으나 공무원 확인란 서명된 사례 - 확인자 의견란에 '문자 수신 완료'만 적고 세대주(원) 서명없이 다수 제출한 사례 -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출력일 이후 최장 60일 지연 확인한 사례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■■■■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■■■■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전입신고 거주사실 사후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